

기둥측면충돌 기준(제102조의4 관련)

시 험 조 건	기 준
1. 매시 32킬로미터로 고정된 기둥에 자동차의 길이방향중심선이 75도가 되도록 자동차의 운전자측 옆면(차체가 좌우대칭이 아닌 경우에는 운전자측 또는 그 반대측면)을 충돌시킬 때에 충돌면에 인접한 전열좌석에 착석시킨 인체모형의 상해기준, 문열림장치기준 및 연료장치기준	가. 인체모형의 상해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)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머리 상해기준값이 1,000 이하일 것 $[1/(t_2-t_1) \int_{t_1}^{t_2} a dt]^{2.5} (t_2-t_1)$ a: 중력가속도의 배수로 표시되는 합성가속도 t_1, t_2: 충돌 중 36/1,000초 이하의 간격을 갖는 임의의 두 순간 2) 어깨 측면방향 하중은 3킬로뉴턴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) 갈비뼈 변형값이 5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) 복부 내부 변형값은 6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) 척추 하부 합성가속도는 3/1,000초 이상 중력가속도의 75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6) 두덩뼈 유착 하중은 3.36킬로뉴턴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. 기둥에 충돌되는 문은 자동차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아니하여야 하며, 그 밖에 충돌되지 아니하는 문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것 1) 문걸쇠장치는 잠금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, 스트라이커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. 2) 차체와 문사이를 연결하는 문경첩장치는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. 3) 문걸쇠장치 및 문경첩장치는 각각 고정부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. 다. 충돌 후 연료장치의 누유량은 충돌 후 5분 동안

	142그램 이하이어야 하며, 정지 후 5분 이후부터 30분까지 매분 28그램 이하일 것
--	---

주)

1. "월드사이드(WorldSID) 50퍼센트 성인남자"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
동측면충돌시험에 사용되는 50퍼센트 성인남자를 대표하는 인체의 특성을
갖춘 시험용 인체모형을 말한다.
2. 삭제 <2022. 10. 26.>